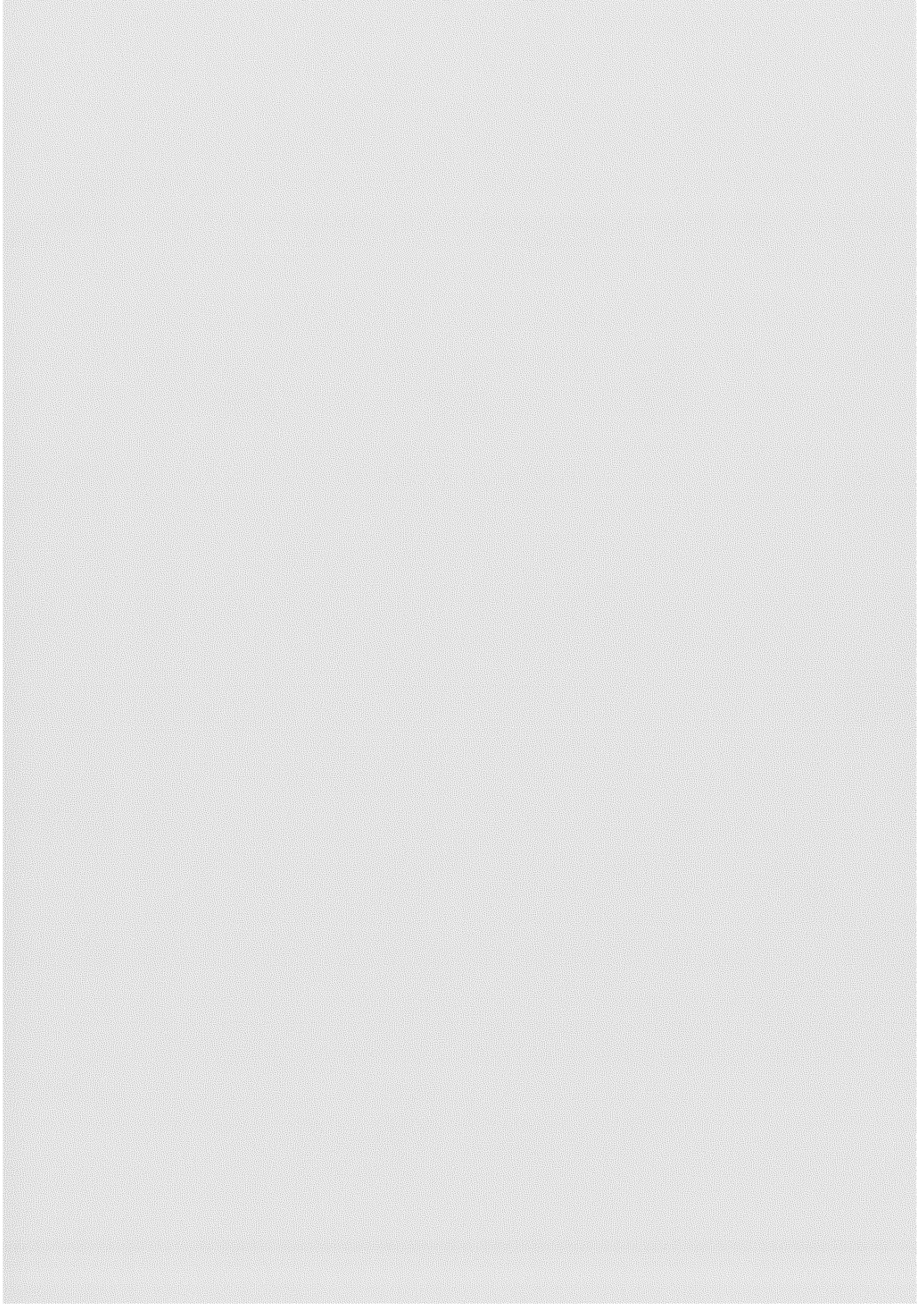


第142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2.6.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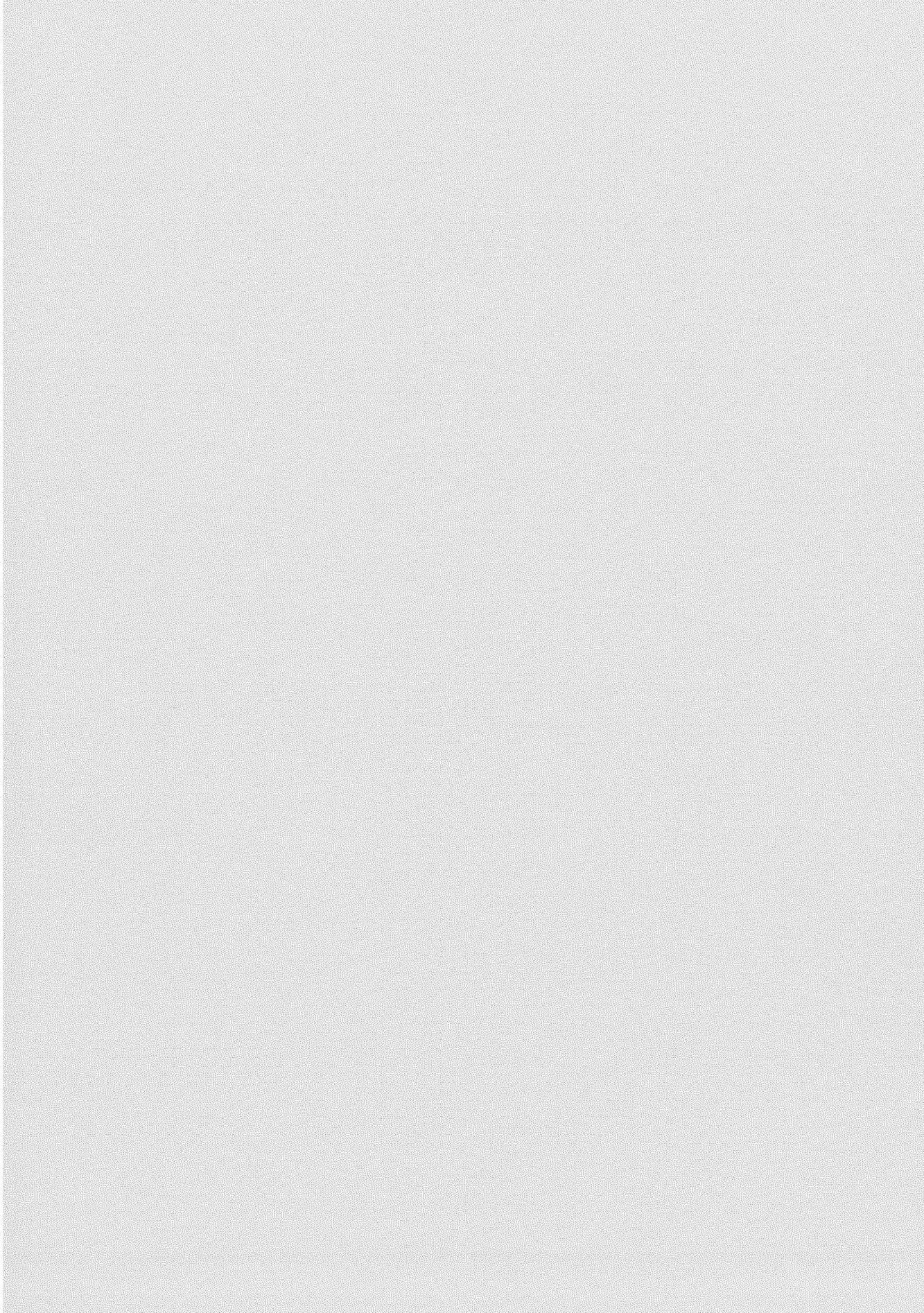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42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227
II. 제14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29
III. 제14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37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243
2.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45
3.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47
4.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	251
5.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263
V. 별 책 부 록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 2001회계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	
▶ 2001회계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의건서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6월 4일 (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142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왕년)

(11시 00분 개식)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왕년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14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6월 4일 (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42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42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교육감 제출)
4.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교육감 제출)
5.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청 관계관 불출석 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장께서 검토평가전 참관

차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조계환

의사과장 조계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5월 1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 요구가 있어, 5월 27일 공고 제2002-6호로 제14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 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제1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신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청에 이송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지난 5월 17일 집행청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비비지출승인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42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05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 회기는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5일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6월 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 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 07분)

● 의장 손만재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6월 4일 (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4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4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교육감 제출)
4.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교육감 제출)
5.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청 관계관 불출석 현황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장께서 검토평가전 참관

차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 의사과장 조계환

의사과장 조계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5월 17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 요구가 있어, 5월 27일 공고 제2002-6호로 제14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 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제1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신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청에 이송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지난 5월 17일 집행청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42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05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 회기는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5일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6월 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 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 07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하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실’ 구현으로 21세기 선진교육을 지향하는 활기찬 충북교육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1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추진 과정을 말씀 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6일부터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

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세입결산은 1조 125억 2,812만원이고, 세출은 8,455억 9,088만원으로서 1,669억 3,724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11억 9,807만원이 이월사업비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57억 3,917만원으로서 2002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1조 125억 5,82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1조 125억 2,81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은 17.1%인 1,729억 301만원이며, 의존수입은 82.9%인 8,396억 2,511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조 134억 3,643만원으로 83.4%인 8,455억 9,088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사업비 572억 5,871만원과 사고이월사업비 339억 3,936만원으로 911억 9,80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57억 3,91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의 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3,518억 5,490만원, 물건비 1,079억 990만원, 경상이전 2,469억 6,919만원, 자본지출 1,220억 6,152만원, 차입금 상환 167억 2,800만원, 반환금 기타경비 6,737만원으로 총 8,455억 9,08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제142회-제1차 본회의]

다음은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액은 재산매각 분납금 잔액 3,600만원, 원어민교사 주택 및 교원단체 사무실 전세권 3억 4,800만원, 재산임대료 등 3종에 4,571만원, 공무원자녀 대여 학자금 299억 7,511만원으로 총 304억 482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차입금 803억 5,200만원으로 교원명예퇴직 수당과 학교통·폐합 지원비, 학교시설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공유재산에 대한 현재액은 행정재산 1조 8,502억 9,200만원, 잡종재산 369억 1,182만원으로 총 1조 8,872억 382만원이고, 물품 현재액은 14,896종에 784억 2,58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교육자치기반을 구축하고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기본운영비 579억 4,001만원과 목적사업지원비 612억 4,64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2년 3월 개교한 청주개신초등학교와 9월 개교예정인 청주동주초등학교의 시설과 2003년도 개교를 예정으로 추진하는 신설학교의 부지 매입, 설계 등

총 291억 8,880만원을 투자하였고, 과밀학교 완화를 위한 부족교실 증축에 161억 3,167만원,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시설 94억 4,339만원, 학교시설 확충과 증·개축 139억 3,696만원,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에 516억 1,336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 시설사업에 27억 3,838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서가는 교육정보화 기반을 구축하여 학교를 작은 정보화 사회로 건설하고, 제2단계 교단선진화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정보화사업에 168억 7,065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도모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49억 9,153만원과 학교급식 운영 및 시설 확대에 8억 4,422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건설한 사학으로 육성지원하여 공·사립학교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사립학교의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534억 47만원, 시설비 등 기타사업에 113억 2,933만원으로 총 647억 2,9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 참 조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별첨 2)
(끝에 실음)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별첨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결산개요(별책 2)
2001회계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별책 3)

다음은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
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에 5억 263만 4,080
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7일 폭설로 인하여 진천농
공고등학교 및 제천농업고등학교의 실
험·실습장인 비닐하우스 포장 12동이 완
파 또는 반파 됨에 따라, 신학기 교육과
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소요되는
복구비 1억 6,575만 6천원과,

1998년 10월 26일 가경중학교 1학년 6
반에 재학 중이던 박세미 학생이 2층 베
란다 청소를 하기 위해 창문을 넘어 베란
다로 내려가다 실족하여, 1층으로 떨어져
경추 4번, 7번 골절 및 탈구로 영구 불구
자가 된 바, 학교시설 설치·관리 하자
및 담임교사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들어
소송를 제기한 사건으로, 1심 손해배상
판결액 3억 6,918만 1,981원과 가집행 선
고가 있어서 연 2할 5푼의 이자부담 및
원고측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피고과실을
30% 인정한 나머지 2억 2,650만원과 대전
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금이 3억 3,900만

원에 확정판결 됨에 따라, 기지금액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
지 1억 1,037만 8,080원 등 배상금으로 3
억 3,687만 8,08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
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
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별첨 3)
(끝에실음)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

(11시 16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소위원회구성건의를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는 의장을 제

[제142회-제1차 본회의]

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즉시 예산·결산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6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이충원 위원님과 조일환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4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 김 검,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별첨 2)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별첨 3)

※ 별 책 부 록

-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별책 1)
- ▶ 2001회계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별책 2)
- ▶ 2001회계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별책 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6월 7일 (금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附議된 案件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교육감 제출)
2.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청으로부터 초등교육과장께서 연가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조일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조일환

예·결소위원회 위원장 조일환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소상하게 말씀 올리면은, 위 안건은 지난 5월 17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금번 회기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서 회부된 날부터 2차에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주요내용은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만 발췌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하여 보면은, 2001회계년도 예산현액은 1조 134억 3,643만 4천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은 각각 1조 125억 2,812만 7천원과

8,455억 9,088만 5천원으로, 1,669억 3,724만 2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각 부문별 결산내역을 세입, 세출, 이월비, 예비비, 채권 및 채무, 재산, 금고의 결산 순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세입결산은 총 1조 125억 5,827만 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125억 2,812만 7천원이 수납되고, 1,875만 3천원이 불납결손, 1,139만 7천원이 미수납 처리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9.9%, 징수결정액 대비 9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보면, 의존수입이 8,396억 2,511만 2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의 82.9%나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1,729억 304만 5천원으로 17.1%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8,455억 9,088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4%가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11억 9,807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의 9.0%이며, 불용액은 766억 4,747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월액 현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청, 교육지원기관, 지방채상환에서 발생하였는데, 이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86.1%로 거의 대부분이 시설공사비라 할 수 있겠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 비율이 7.5%로 2000년도 7.6%와는 비슷한 수준이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비비 35.7%와 초·중·고등학교 시설비 24.1%, 급여 및 복지후생비 33.2%입니다.

다음 이월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는 명시이월 116건에 572억 5,871만 6천원, 사고이월 89건에 339억 3,935만 7천원, 총 205건에 911억 9,807만 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6건이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414억 401만 6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자연재해로 인한 진천농고와 제천농고 피해복구비 1억 6,575만 6천원과 가경중학교 학생사고 손해배상금 3억 3,687만 8천원으로, 금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00년도말 267억 205만 8천원에서, 2001년도중 61억 3,872만 2천원이 발생하고, 24억 3,595만 2천원이 소멸되어서, 2001년도말 현재액은 304억 482만 8천원으로 채권액의 대부분은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입니다.

채무는 2000년도말 970억 8,000만원에

서 2001년도 중에 167억 2,800만원이 소멸되어 2001년도말 현재액은 803억 5,200만원으로, 채무의 대부분은 교원 명예퇴직수당, 학교통·폐합지원 및 학교시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 2001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1,009억 8,371만 5천원이 증가된 1조 8,872억 382만 2천원이며, 물품의 2001년도말 현재액은 14,896점에 784억 2,588만 8천원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 13,365점 705억 4,078만 3천원에 비하여, 2001년도 중에 2,082점 100억 6,503만 8천원이 증가되고 551점 21억 7,993만 3천원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다음 금고의 결산을 말씀드립니다.

2001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누계액은 총 수입이 1조 125억 2,812만 8천원이고, 총 지출이 8,455억 9,088만 5천원이며, 차입잔액이 1,699억 3,724만 3천원으로, 이중 500억은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입되었는데, 이는 금고발행 세입·세출누계액증명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결산, 재산의 결산 등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은 지

방재정법을 비롯한 제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사업비에 대하여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여, 가능한 한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주요내용과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해로 인한 진천농고와 제천농고 피해복구비 1억 6,575만 6천원과 가경중학교 학생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및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3억 3,687만 8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향후 학생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각별한 관심은 물론, 학교 시설물 관리에도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지출승인의건도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하였으며, 역시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참 조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별첨 4)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별첨 5)

(끝에 실음)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청 관계관계에서도 그동안의 소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조일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4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4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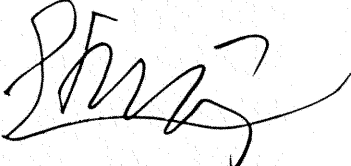
-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별첨 4)
-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별첨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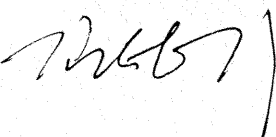
제14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2. 6. .

의 장 손 만 재 

위 원 이 충 원 

위 원 조 일 환 

의사국장 김 성 기 

(별첨 1)

議 事 日 程 (案)

第142회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2. 6. 4. ~ 6. 7.(4 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6月 4日(火) (11:00)	<input type="checkbox"/> 開 會 式 [第1次 本會議] 1. 제142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사회)회기결정의건 • 회 기 : 2002. 6. 4. ~ 6. 7.(4 일간) 2.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안설명) 3.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안설명) 4.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예산·결산소위원회	
6月 5日(水) ~ 6月 6日(木)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예산·결산소위원회	本會議 休會 (6. 6. 현충일)
6月 7日(金) (11:00)	[第2次 本會議]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input type="checkbox"/> 閉 會	

(별첨 2)

의안번호	제 142-1호
의결년월일	2002. 6. 7. (제 142회)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2. 5. 17.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안 번호	/42 -/
----------	--------

제출년월일 : 2002.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작성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2001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중 세입결산액은 1,012,528,127,750원, 세출결산액은 845,590,885,23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91,198,072,77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5,739,169,750원으로

총 166,937,242,52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함.

3.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2001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따로붙임.

(별첨 3)

의안번호	제 142-2 호
의결 년 월 일	2002. 6. 7. (제 142 회)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2. 5. 17.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142-2
------	-------

제출년월일 : 2002. 5.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과

제안이유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지출건수 : 2건
- 지출결정액 : 502,635,000원
- 지출액 : 502,634,080원
- 잔액 : 920원
- 지출사항
 - 가경중학교 학생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및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336,878,080원
 - 자연재해(폭설)로 인한 교육과정 수행에 필요한 실험실습장(비닐하우스 포장) 붕괴에 따른 피해복구비 165,756,000원
 (진천농공고:157,227,000원, 제천농고:8,529,000원)

예비비지출내역

(단위:원)

건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액	비고
재해피해 복구비 지원	2001. 2. 12.	157,227,000	157,227,000	0	- 진천농공고 실습포장
	2001. 2. 12.	8,529,000	8,529,000	0	- 제천농고 실습포장
배상금 지급	2001. 1. 10.	226,500,000	226,500,000	0	- 가경중학교 학생사고 청구소송 1심 판결
	2001. 8. 30.	110,379,000	110,378,080	920	- 가경중학교 학생사고 청구소송 확정판결
계		502,635,000	502,634,080	920	

예비비사용명세서 : 별첨

2001. 예비비 사용 명세서

예비비지출 사용현황

(단위:원)

과 목						예비비 지출결정액	예비비 사용액	잔액	비고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학교 교육	고 학	등 교	실업교육 지원	실업계고교 운영지원	교 사 업 비	학교회계 전출금	136,110,000	136,110,000	0	진천농공고, 제천농고
학교 교육	고 학	등 교	시설확충	학교시설 관	학교시설 사업비	시 설 비	29,646,000	29,646,000	0	진천농공고
교육 행정	교육청	교육청 운	교육청 영	법무관리	교 육 사업비	배 상 금	336,879,000	336,878,080	920	손해배상금
합 계							502,635,000	502,634,080	0	

예비비지출 사유

○ 재해피해 복구비 지원

- 2001. 1. 7 자연재해(폭설)로 인하여 교육과정 수행에 필요한 실험·실습장(비닐 하우스 포장) 12동(진천농공고 7동, 제천농고 5동)이 완파 또는 반파됨으로 신학기 교육과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소요되는 복구비를 예비비에서 지출

○ 가경중학교 학생사고 청구소송 1심 및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 1998. 10. 26. 16:00경 가경중 1-6반 박세미가 청소 시간에 담임교사로부터 2층 베란다 청소 지시를 받고 급우들과 상의한 바 위 학생이 베란다 청소를 하기로 하고 창문을 넘어 베란다로 내려가다 실족하여 1층으로 떨어져 경추4번, 7번 골절 및 탈구로 영구 불구자가 된 바 학교시설 설치, 관리하자 및 담임교사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손해배상 청구액 : 754,810,868원),
- 1심 결과(2000. 12. 1) 손해배상 판결액 369,181,981원과 가집행 선고가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원고측 지급요청이 있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연 2할 5푼을 감안하여 일부를 배상하는 것이 이자부담 및 원고측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어 피고 과실을 30%인정한 나머지 226,500,000원을 지급하였고
- 대전고등법원에서 확정 판결액이 339,000,000원(2001. 8. 16)으로 기 지급액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110,378,080원을 지급하였음.

(별첨 4)

(제142회 임시회)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 사 보 고 서

2002. 6.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목 차

1. 심사경과	253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253
3. 충청북도결산심사 위원회 결산검사 의견	253
4.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254
5. 토론 주요내용	254
6. 심사보고 주요내용	254
7. 심사결과	260
8. 소수의견 주요내용	260
9. 기타 필요한 사항	260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5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2년 6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1차 소위원회(2002년 6월 4일)

○ 제2차 소위원회(2002년 6월 5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2001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1,012,528,127천원, 세출결산액은 845,590,885천원이며,

○ 이월사업비는 91,198,073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5,739,169천원으로 총 166,937,242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됨.

3. 충청북도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

: [결산검사 의견서] 따로 붙임.

4.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5.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보고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963,642,371	1,013,436,434	1,012,528,127	845,590,885	166,937,242

-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013,436,434천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1,012,528,12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 수납되었으며,
- 세출결산액은 845,590,88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4%를 집행하였고,
- 세계잉여금이 166,937,242천원이 발생되어 이중 91,198,073천원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75,739,169천원은 다음 년도 세입으로 이입되었음.

- 순세계잉여금 : 75,739,169천원
- 명시이월사업비 : 57,258,716천원
- 사고이월사업비 : 33,939,357천원

나. 세입결산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
1,013,436,434	1,012,558,277	1,012,528,127	18,753	11,397	99.9%	99.9%

2001년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총 1,012,558,27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012,528,127천원이 수납되고 18,753천원의 불납결손과 11,397천원이 미수납 처리

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99.9%, 징수결정액 대비 9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 의존수입 839,625,112천원(82.9%)
- 자체수입 172,903,045천원(17.1%)으로,

전년도 대비 재정자립도에 있어 자체수입의 비율이 5.7% 낮아졌음.

다. 세출결산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율	불용율
963,642,371	49,794,063	1,013,436,434	845,590,885	91,198,073	76,647,476	83.4%	7.5%

2001년도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845,590,885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3.4% 집행되었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91,198,073천원으로 예산현액의 9.0%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76,647,47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인데,

○지출액 845,590,885천원의 내용을 관별로 살펴보면,

- 유치원 3,272,053천원(0.4%)
- 초등학교 118,558,672천원(14.0%)
- 중 학교 79,919,334천원(9.5%)
- 고등학교 94,455,172천원(11.2%)
- 특수학교 9,525,978천원(1.1%)
- 기타학교 57,895천원(0.0%)
- 평생교육 2,024,803천원(0.2%)
- 급여관리 444,046,996천원(52.5%)
- 복지후생 55,838,415천원(6.6%)
- 교육위원회비 310,257천원(0.0%)
- 교육청 6,751,418천원(0.8%)
- 지역교육청 4,746,385천원(0.6%)
- 교육지원기관 3,759,483천원(0.5%)

- 지방채상환 22,256,655천원(2.6%)
- 제지출경비 67,369천원(0.0%)으로,

○ 다음년도 이월액 91,198,073천원의 관별 내용은,

- 초등학교 27,987,269천원(30.7%)
 - 중 학교 11,481,574천원(12.6%)
 - 고등학교 39,020,432천원(42.8%)
 - 교 육 청 99,101천원(0.1%)
 - 교육지원기관 9,337,697천원(10.2%)
 - 지방채상환 3,272,000천원(3.6%)으로
-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시설공사임.

○ 불용액 76,647,476천원의 관별 내용은,

- 유 치 원 108,548천원(0.2%)
- 초등학교 8,301,929천원(10.8%)
- 중 학교 3,252,860천원(4.3%)
- 고등학교 6,924,032천원(9.0%)
- 특수학교 247,389천원(0.3%)
- 기타학교 1천원(0.0%)
- 평생교육 77,807천원(0.0%)
- 급여관리 14,355,269천원(18.7%)
- 복지·후생 11,102,667천원(14.5%)
- 교육위원회 27,573천원(0.0%)
- 교 육 청 1,649,015천원(2.2%)
- 지역교육청 752,922천원(1.0%)
- 교육지원기관 2,280,386천원(3.0%)
- 지방채상환 211,345천원(0.3%)
- 제지출경비 1천원(0.0%)
- 예 비 비 27,355,731천원(35.7%)으로써

예산현액에 대한 총 불용비율이 7.5%로 2000년도 7.6%와는 비슷한 수준이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비비와 초·중·고등학교 시설확충비임.

라. 이월비 현황

(단위 : 천원)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 속 비 이 월		계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116	57,258,716	89	33,939,357	0	0	205	91,198,073	

2001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 116건에 57,258,716천원, 사고이월 89건에 33,939,357천원, 총 205건에 91,198,07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6건이 증가하고, 금액으로는 41,404,016천원이 증가하였음.

마. 예비비 결산

(단위 : 천원)

건 명	예 비 비 지출결정액	예 비 비 지출 액	지출결정일	비 고
재해피해 복구비	157,227	157,227	2001. 2. 12	진천농고 실습포장
	8,529	8,529	2001. 2. 12	제천농고 실습포장
배 상 금	226,500	226,500	2001. 1. 10	가경중 학생사고 청구소송 1심판결
	110,379	110,378	2001. 8. 30	가경중 학생사고 청구소송 확정판결
계	502,635	502,634		

위 건의 예비비 지출은 자연재해(폭설)로 인한 교육과정 수행에 필요한 실험실습장 붕괴에 따른 피해복구비와, 가경중학교 학생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및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액으로 금회 제142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관련임.

바.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채 권

(단위 :천원)

종 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중 발생액	당해년도중 소멸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비 고
재입대료	2,087	13,412	4,102	11,397	폐교 임대료 미납금
재매각대	594,855	0	558,855	36,000	폐교재산 매각대분납
수업료	27,802	0	0	27,802	세입금 횡령분
전세권	256,000	112,000	20,000	348,000	원어민 전세금 외 1
구상권	0	9,510	2,993	6,517	제천중학교 화재사건 구상금
대여장학금	25,821,314	6,003,800	1,850,002	29,975,112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계	26,702,058	6,138,722	2,435,952	30,404,828	

채권은 2000년도말 26,702,058천원에서 2001년도중에 6,138,722천원이 발생하고 2,435,952천원이 소멸되어 2001년도말 현재액은 30,404,828천원으로 채권액의 대부분(98.6%) 이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임.

○ 채 무

(단위 :천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중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기한도래 미지급이자	비 고
		채무발생액	상환·소멸액			
차입금	97,080,000		16,728,000	80,352,000	0	

채무는 2000년도말 97,080,000천원에서 2001년도중에 16,728,000천원이 소멸되어 2001년도말 현재액은 80,352,000천원으로 교원 명예퇴직수당, 학교 통합합지원, 학교시설비임.

사. 재산의 결산

○ 공유재산

(단위 : 천원)

구분 재산별	2000년도말 현재액	2001년도 증 감		2001년도말 현재액	비 고
		증	감		
합 계	1,786,220,107	120,793,270	19,809,555	1,887,203,822	
행정재산	1,747,660,906	116,011,481	13,380,381	1,850,292,006	
잡종재산	38,559,201	4,781,789	6,429,174	36,911,816	

공유재산의 2001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해 100,983,715천원이 증가된 1,887,203,822천원으로 이를 구분하여 보면,

- 행정재산의 2000년도말 현재액은 1,747,660,906천원으로 2001년도에 116,011,481천원이 증가되고 13,380,381천원이 감소되어 2001년도말의 현재액은 1,850,292,006천원이고,
- 잡종재산의 2000년도말 현재액은 38,559,201천원으로, 2001년도에 4,781,789천원이 증가되고 6,429,174천원이 감소되어 2001년도말 현재액은 36,911,816천원임.

○ 물 품

(단위 : 천원)

2000년도말 현재액		2001년도 증 감				2001년도말 현재액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13,365	70,540,783	2,082	10,065,038	551	2,179,933	14,896	78,425,888

물품의 2001년도말 현재액은 14,896점에 78,425,888천원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 13,365점 70,540,783천원에 비하여 2001년도에 2,082점 10,065,038천원이 증가되고, 551점 2,179,933천원이 감소되었음.

아. 금고의 결산

(단위 : 천원)

총 수입	총 지출	차인잔액	비 고
1,012,528,128	845,590,885	166,937,243	○ 결산전 다음 년도 세입 이입액은 50,000,000천원이며, 금고 예치금은 없음.

2001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누계액은 총 수입이 1,012,528,128천원이고 총 지출이 845,590,885천원이며, 차인잔액이 166,937,243천원으로 이중 50,000,000천원이 결산전에 다음년도의 세입으로 이입되었는데, 이는 금고발행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과 일치함.

자. 종합의견

위와 같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결산, 재산의 결산 등 각 분야별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제규정과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작성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에도 적정을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사업비에 대하여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여 가능한 한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함.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2. 6. 7.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조 일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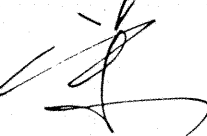
간사 이 충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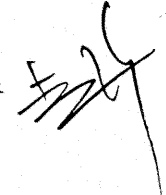
위원 김 광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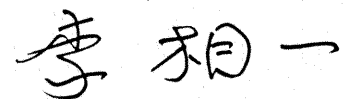
송 진 하



이 기 수



이 상 일



(별첨 5)

(제142회 임시회)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 승인의견

심 사 보 고 서

2002. 6.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 승인의견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5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2년 6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1차 소위원회(2002년 6월 4일)

○ 제2차 소위원회(2002년 6월 5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가. 제안이유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지출사항은 가경중학교 학생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및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336,878천원과 자연재해(폭설)로 인한 교육과정 수행에 필요한 실험실습장(비닐하우스 포장)붕괴에 따른 피해복구비 165,756천원임.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가.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건 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재해피해 복구비	2001. 2. 12	157,227	157,227	0	진천농고 실습포장
	2001. 2. 12	8,529	8,529	0	제천농고 실습포장
배 상 금	2001. 1. 10	226,500	226,500	0	가경중 학생사고 청구소송 1심판결
	2001. 8. 30	110,379	110,378	1	가경중 학생사고 청구소송 확정판결
계		502,635	502,634	1	

○ 재해피해 복구비 지원

- 2001. 1. 7. 자연재해(폭설)로 인하여 교육과정 수행에 필요한 실험·실습장(비닐하우스 포장)12동(진천농공고 7동, 제천농고 5동)이 완파 또는 반파됨으로 신학기 교육과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소요되는 복구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임.

○ 가경중학교 학생사고 청구소송 1심 및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 1998. 10. 26. 16:00경 가경중 1-6반 박세미가 청소시간에 2층 배란다에서 청소를 하던 중 실족하여 1층으로 떨어져 영구 불구자가 된 바, 학교시설 설치, 관리하자 및 담임교사의 직무 집행상 과실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액 : 754,810,868원),
- 1심 결과(2000. 12. 1.)손해배상 판결액 369,181,981원과 가집행 선고가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원고측 지급요청이 있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연 2할 5푼을 감안하여 일부를 배상하는 것이 이자부담 및 원고측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어 피고 과실을 30%인정한 나머지 226,500,000원을 지급하였고,
- 대전고등법원에서 확정 판결액이 339,000,000원(2001. 8. 16.)으로 기 지급액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110,378,080원을 지급한 것임.

나. 종합의견

위와 같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금번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나, 향후 학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각별한 관심은 물론, 학교 시설물 관리에도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함.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2. 6. 7.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조 일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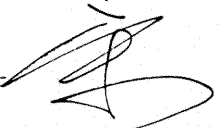
간사 이 충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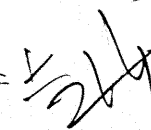
위원 김 광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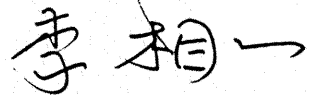
송 진 하



이 기 수



이 상 일



第142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豫算・決算小委員會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4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	273
II. 제14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	277
III. 부 록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313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6월 4일 (화요일) 11시 20분

議事日程 (제14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20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 김광수 위원

자료에 보면 조일환 위원이 한 번밖에 안했네요. 조일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조일환 위원

간사가 한번을 안했어요, 저는 간사를. 간사나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이번에 다른 분이 위원장 하시고, 제가 간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간사를 한번도 못해 봤어요.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저 이충원 위원님이 하시면 어떻겠어요?

● 이충원 위원

아니에요. 두 번이나 했어요.

● 이기수 위원

두 번 했어요?

● 송진하 위원

앞으로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하시죠.

● 이충원 위원

아니, 숫자에 둔해서 안 되요.

● 이기수 위원

근데 다 두 번이 다 최소인 것 같은데요?

●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충원 위원님이 하세요.

거기서 위원장 하시고 뭐 간사 한번 죽어도 하고 싶다니까 조일환 위원님이 간

사하고.....

● 이충원 위원

마지막 금요일날 저기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고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안하는게 좋겠어요. 금요일날 겨우 시간이 되어 갖고.....

● 김광수 위원

그러면 가만 있어 봐.....

● 이충원 위원

간사는 할래요. 간사를 하든지.

● 김광수 위원

그래요 그럼 조일환 위원이 해야겠어요. 한 번밖에 안하기 때문에 뭐 위원장.....

● 이충원 위원

전폭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예, 조일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조일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

대)

● 위원장 조일환

이제 뭐 결산관계도 모든 게 정리하는 그런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결산감사에 대한 그런 좋은 의견들을 결산하는 그런 결산소위원회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갖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감사도 다 결정된 걸로 보면 되죠.

● 김광수 위원

격식은 갖춰야죠.

● 이충원 위원

예, 감사는 제가 자진해서 하죠.

● 위원장 조일환

그럼 우리 저.....

● 김광수 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 남기기 위해서도 해야죠.

2. 감사선출의견

(11시 24분)

● 위원장 조일환

그러면 감사 위원님을 선출해야 되는데 추천해 주시면, 예.....

● 이기수 위원

이충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조일환

네, 이충원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거기에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충원 위원

있으면 큰일나요.

● 위원장 조일환

이충원 위원님이 선출된 걸로 제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출된 우리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 감사 이충원

제가 위원장님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3. 의사일정결정의견

(11시 26분)

● 위원장 조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관행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본 소위원회 활동은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과 그리고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

인의건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정된 것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 제2차 소위원회에서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8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조일환, 간사 이충원,

위원 김광수, 송진하, 이기수,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3명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 부 록

-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6월 5일 (수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4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附議된 案件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일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위원장 조일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해당과장님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학교운영지원과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입니다.

2001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세입세출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2001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개요 - 본회의 (별책 2)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전 예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답변하는 원칙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시고, 국장님께서 부득이 실무과장님이 할 것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나다순에 의해서 오늘도 진행할까요?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특별히 빨리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예,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 좌석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일문일답 형식이니까 답변하시

는 관계관계서는 위원님 질의에 충실하면서도 좀 명료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김광수 교육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업무는 이미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이미 검토하고 조사해서 이와 같이 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몇 마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냥 궁금하고 이런건가 싶은 그런 사항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재해복구비는 이게 국고에서 지원이 된 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폭설로 인해서 저희들이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그 중에 일부가 농림부에서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전액이 아닌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예.

● 김광수 위원

그전에 재해복구비 같은 이런 것은 우선 지불을 했는데, 그 다음에 조사해서 올리면 100%, 120% 나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만치 만나왔었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과거에는 그것이 충분히 나와있었는데, 올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많이 오는 바람에, 농민들하고 보조 관계의 형평성 때문에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을 100% 주지 못하고 일부만 와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속해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경중학교 학생사고 관계, 이것이 본인이 요구한 것은 7억 5천 4백 얼마인데 많이 재판과정에서 감이 났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차 지방법원하고 고법에서 이제 이렇게 한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재해보상금이 나오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저희들이 이제 그것이 소송에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되기 그 이전에, 저희들이 안전공제회에서 일부 예산을 지불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 당시에 원금을 다 갚지 않을 경우에 이자까지를 매일 저희들이 물어야 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을 예비비에서 부득이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 김광수 위원

여기도 이자가 좀 발생했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이자 많이 발생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이자가 발생했지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예.

● 김광수 위원

그것을 그냥 1심에서 승복하고 다 냈으면 이자발생은 안하는데.....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고등법원까지 가는 동안에 이자발생은 안됐을 건데요, 1심.....

● 김광수 위원

그러나 또 상고를 안할 수가 없지요, 법적으로.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학교당국이나 담임의 부주의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변상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본래의 고의성이 지도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선생님이 주의를 다했고, 또 본인 자신이 그거를 청소를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갔는데, 이 청소도 우리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교육과정의 일부분이지, 그것이 어떤 선생님 개인이 지도 하는 시간외의 어떤 사고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가 되어 있어서 완전히 학교가 끝나는 기간까지 학교활동으로 보고, 또 선생님이 자기 할 일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구상권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 김광수 위원

담임교사가 충분히 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이 저희들이 충분히 있었는지 여러 가지 학생들 정황이라든가, 그 당시 학급 일지 또 교장선생님이 그때의 받은 진술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다소의 경미한 주의를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고의성이 전혀 있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래서 안전공제회 빼놓고서 순수하게 보상해 준 것은 얼마나 되요? 여기 그게 안나왔기 때문에.....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한 것이 4,77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그때 당시 안전공제회의 최고 보상 한도액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워낙 불구에 가까운 큰 증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안전공제회의 최고 한도액을 1억원으로 증액해서, 앞으로는 좀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보다는 안전공제회에서 부담액이 조금 더 많아 질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 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상한선이 5천까지밖에 아니에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당시에는 5천만원 이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지금은 1억으로 되었어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예.

● 김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1조원대가 금년이 아니고 작년에 1조원대가 됐네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실질적으로 결산결과로는 작년에 1조원이 넘었습니다.

작년 세출액이 1조 125억 정도의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모는 결산 규모는 작년에 이미 1조원 시대 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광수 위원

항시 언젠고 결산서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월금 때문에 많다 적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연말에 예산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용액이 766억이나 되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부분별로 볼 것 같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급여관리에서 143억 5,5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급여관리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본래 저희들이 급여의 예산편성 기준은 정원으로 예산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께서 다 아다시피 저희들도의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가 상당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임시교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교원을 채용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인 정규교사와 일반 임시교사들 간의 격차, 그것 때문에 많이 그것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 위원

그 격차가 140억이나 되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본래 연말 이것이 추경이 자주 있게 되면은, 연말에 사실상 이런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조정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들어 갈 때가 한 9월내지 10월달쯤 편성을 해서 11월달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정산부분이나 이러한 거를 명쾌하게 저희들이 파악은 조금 소홀히 된 점은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교육부에서 다 이렇게 인정이 되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입니다.

교원이 약 한 320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금액이 113억 8천만원 되고, 거기다 명예퇴직 수당이 30억이 또 불용한 게 있습니다. 전체 한 140억 됩니다.

● 김광수 위원

초등학교 교사 한 300여 명이 부족한 거.....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정원 대비 차이 나는 인원수가 300여명 됩니다.

● 김광수 위원

우리가 예산편성 해서 이렇게 한거라고 봐서 예산편성한 사람들이 이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 교육부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회수한다고 해도 별로 말못할 것 아니겠어요?

과다 예산책정이 된 거 아니냐, 또 교원 300여명 모자라는 거 충당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여하튼 쓰고서 남은 거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회수하라고 할 것 같으면 회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응균

교육부에서 회수는 하지 않고 어차피 정원가지고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전에 요근자에는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전에는 재원을 여기 다 숨겨 가지고서 뒤로 이렇게 넘겨서 그 다음 해로다가 이렇게 이월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 혹시 그런 거는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복지예산 볼 것 같은데 111억이란 말이에요. 복지예산은 뭐가 이렇게 불용액이 됐어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응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응균입니다.

요거는 복지후생비로서 의료보험부담금이나 연금부담금 각종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 111억 3백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 김광수 위원

예, 저희들이 이렇게 결산소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견을 제시해서 궁금한 것을 알아볼 정도에 끝이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아주 틀렸다고 해서 뭐 수정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겠고, 그 정도의 그냥 궁금한 거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환

예, 김광수 위원님 상세하게 잘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진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2001회계년도의 예산이 1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인데, 현재까지는 큰 사고 없이 또 별로 부당하다는 여론 없이 집행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쓰고 난 예산을 우리가 뭐 값이 따질 수도 없는 거고, 의문 나는 점을

물어보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 의견서 여기 이거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회계분야에 밝은 분으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의견서를 보면은, 3개분야 중에서 2가지 분야는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리가 됐는데, 결산검사 3항, 3항은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와 있어요. 그래 3항이 뭐냐 하면은 분야별 결산검사 내용입니다.

첫째항이 임대료하고 임대료 미수납 관계를 여기서 거론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5%의 연체료를 가산해서 15일 내에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하고, 추가 납부고지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체납 체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데 그렇게 안하므로 해서 체납을 초래했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시다보면은 이분들의 견해고, 또 집행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송진하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연약한 도세입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수금 많

은 거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사용 수입허가를 해서 대부를 할 때는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계약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도 제때 발부하고 합니다 마는, 또 여러 가지 대부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행보증보험서를 첨부하거나, 아니면은 지정된 납부기일 내에 세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음부터는 세입예산에 대한 미수납 발생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래서 앞으로 분교장이 폐교되고 본교도 그렇게 이렇게 되다보면은, 그러한 대가료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아 질 건데, 이와 같이 규정에 의해서 강력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고 하면, 결국 그 체납액이 미수액이 점점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금액의 다소를 막론하고 관계 공무원이 철저히 해서, 교육예산은 뭐 돈을 안내도 차용료를 안내도 된다하는 그런 인식을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의 다소를 막론하고 강력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가 못하는 못하지 그거 왜 할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하고, 또 이행보증보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보증보험을 첨부하면 보증해서에서 변상하는 거 아닙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응균

네.

● 송진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강력히 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런걸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적절한 문책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여도 되고 안받아들여도 그만 이렇게 해서는 기강이 안설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 포상해야지만 또 그런 게 율리한 사람은 뭔가 자극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응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응균입니다.

지금 송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교대상을 임대하는데 사실 애로점은 많습니다.

그러나 애로가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러는 경우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임대료를 완납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행보증보험을 갖다가 완전히 해 놓고 나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이것 이미 산하기관에 시달렸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저희가 잘못 처리된 점이 있습니다. 이미 시·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시를 했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유독초등학교 북편분교 같은 경우는 기수련원 경영하는데, 일부 금액만 내고 나머지는 돈을 안 냈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안하다가 얼마 전에 완납을 했어요. 계속하겠다고 미수납이 380만원 되었는데 완납을 했고, 단양에 대강초등학교 황정분교 같은 경우에는 전통목공예 전시장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 분도 한 65만원만 내고서 돈이 없어 가지고 못 내다가 어제 그저께 납부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하기관에 대책을 강력히 시달렸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설사업 집행부 걱정 이렇게 또 지적이 됐는데, 사실 집행청에서 시설사업은 엄청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일 반자치단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변화가 따르기 마련이고, 가격의 변동 등 여러가지 그러한 적절히 못할 그런 요인들이 발생하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사업은 백년대계로 하는 거고, 이게 잘못 되면은 교육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거고, 국고를 손실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적정을 기하고 또 규정에 따라서 잘 추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두 가지 분야가 지적됐어요.

첫째, 시설사업 발주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본청에 공사관계가 지적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송진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개 학교의 공사가 단일공사로 끝나야 공사도 튼튼하고 모든 학교수업에도 지장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에 의해서 한번에 공사를 발주해서 한번에 완료가 되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의 배경은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 9월달에 편성할 때에, 교원 편의실 2실하고 7차 교육과정 2실을 해서 4실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5대 5 사업인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물량이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1회 추경에 넣고, 또 특별교부금으로 강당중축교부금이 지난 연말에 온 것이, 이제 1차 추경에 확정된 것이 6월 2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놓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던 중에,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이 정부로부터 발표가 되어 가지고, 그 교실로 4실이 또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어차피 당초에 예산이 서있는 당초 1월 1일부터 집행치 못하고, 9월이 넘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종합발주를 하다보니까, 17억 공사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한꺼번에 모든 종합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투자하지 못하고, 예산이 3번에 나눠서 서는 바람에 부득이 공사를 한꺼번에 늦게 발주된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고등학교도 7차 교육과정 6실을 당초예산에 넣었다가, 7차교육과정 3실하고 강당보수가 1회 추경이 6월 21일날 다시 통과가 된 이후에, 다시 또 교육여건개선 사업으로 해서 5실을 지어야 될 그럴 형편이었습니다. 7·20교육여건개선 발표이후에, 그래서 2차 추경이 9월 17일날 되다보니까 당초 예산이 또 9개월 지연되고 또 종합발주 하다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한 10개월 정도 지연된 그런 사례입니다.

● 송진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예산 및 공사발주 추진해 가지고 예성여고하고 제천고가 지적이 됐는데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당초예산에 예성여고를 예를 들더라도 한 4억 예산을 가지고 그 시급한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당초예산에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 그거를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당초예산에 올릴 때는, 언제부터 짓겠다하는 계획이 있을 건데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1회추경, 2회추경 나올 때까지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집행으로 봐서 예산을 묵힌 거고, 또 교육위원회 통과한 거를 통과가 된 거를 그거를 무시한 거지 무시해 가지고 마음대로 묶어 놔다가, 연말에 가가지고 당초예산 1회추경, 2회추경, 1회추경은 6월달에 되고 또 2회추경은 9월달에 되고, 그것도 한참 있다가 12월에 가서 공사를 발주했다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안 되면 안 된다고 뭔가 그런 얘기는 무슨 집행청에서는 요식행위

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결의기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당초예산에 다 했는 줄 아는데, 이제 보니까 안하고 있다가 12월달에 가서 무더기로 합해서 했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편성시기라든가 심의시기가 조금 지연되어서 종합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그 이면에는 사실상 제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부지가 교실을 지을만한 부지가 적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후관 뒤에 있는 부지를 좀 어떻게 효율성 면에서 활용하고, 운동장에다 교실을 짓지 않기 위해서 교실을 물색하다가 교실부지가 확정된 이후에, 예산이 또 지침에 의해서 부득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상황인데, 저희들이 계약관 입장에서는 어떠한 공사를 지금 발주를 하다가 그 이후에 물량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 동일 현장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는데, 그 수의계약이 당초의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계약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상으로.

그래서 요건 부득이 예산이 편성된 시

기와 또 운동장에다가 교실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계약상의 여러가지 저희들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진하 위원

글쎄, 여기 보니까 사업비 100%와 91.9%를 사고이월 했다하는데, 100%를 이월했다는 거는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했다는 거는 하나도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건물을 짓기 위해서 터를 다듬더라도 단 1%라도 일해야 하는데, 100% 일을 안했다 하는 것은 이걸 직무유기가 되든 뭐 문제가 큰거지요. 어떻게 해서 100% 안하느냐 이거예요. 한다고 예산의 결을 시켜 놓고 100% 안했다 하는 거는 이걸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00%의 개념은 제천고등학교나 예성여고가 작년 2001년도에 사업을 안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7월 20일날 교육여건 개선이 발표되고, 9월 달에 예산이 추경에 확정된 이후에,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이미 공사의 발주는 시작이 된 겁니다.

● 송진하 위원

근데 왜 100% 안했다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근데 돈을 지급하는 사고이월로 갔죠, 이게 그래서. 사고이월입니다.

계약도 다하고 공사를 하는 중에 대금만 저희들이 안준 겁니다.

● 송진하 위원

여하튼 의결된 사안을 100%로 이월시켰다하는 문제는 재고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됐든 그렇지 않아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성여고하고 제천고등학교의 시설공사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공사를 갖다가 사고했다 것은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말씀을 드렸지만, 예성여고 예를 들어보면 당초에 계상된 교실 2실하고 편의실 2실을 갖다가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설계가 4월 19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시설비 교부가 4월 17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때 그후에 예성여고에 다시 또 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교육여건개선에서 또 배정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사를 집행하는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교실 4칸을 공개경쟁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공사계약이 4억 됩니다. 나머지 공사비 14억은 이게 이제 공사가 상충부로 올라가다 보니까, 공개 경쟁입찰은 4억 정도하고 한 14억정도를 수의계약 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기왕이면 한꺼번에 몰아가시고 공개입찰보자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래 여기서 지적했듯이 총액입찰제를 실시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응균

전체입찰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을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뭐 잘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제천고등학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늦게 집행을 했습니다.

● 송진하 위원

지나간 거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애써 일하고 나중에 책임추궁 당한다면 그것도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1년을 더듬어 보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서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산편성의 부적정 이래 가지고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이게 학교안전공제회의 수십년 전부터 지원 해 준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런데 이제 왜 금년에는 이게 지적되는 거예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예산의 편성과목 문제인데요, 이것이 지금 각 시·도에 따라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 주는데도 있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 과목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검토한 검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에는, 일단 민간인에 대한 경상 보조로 찾을 때는 보조금 정산을 해야 되고, 출연금으로 줄 경우에는 출연금으로 일단 한번 주고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 안전공제회에 우리가 출연해 주는 금액은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결과를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보고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라면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보다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전국에 예

산을 어떻게 편성하는가 봤더니, 한 70% 정도는 저희들과 같이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편성을 하고, 30% 정도가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본래 보조금으로 준다기보다는 출연금으로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이 서서, 내년부터는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래 사단법인인 학교안전공제회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꼭 국고에 준예산만 먼저 쓴다라는 그런 회계상 구분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주고 나면은 보조에 대한 사용내역을 정산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연금으로 해야 되는 것이 더 타당치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사실 뭐라 할까 지원해 주는 것이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 부교육감님으로 되어 있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러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걸 뭐 결과를 결산을 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검

사원들이 지적했다해 가지고 거기에 자극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우리 하는 것이 편의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본다면 그대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럼 다음부터 출연금으로 하겠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 송진하 위원

적절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로 하실만한 거는 하시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더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환

그럼, 우리 저.....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집행청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고 여러 가지 애 많이 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피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원래 방대하고 해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1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매년 예산을 예산이니까 결국 집행하고는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제 사실은 불용율이 7.6%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7.6%는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좀 많은 편입니까? 뭐 불용률이 적은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2000년도로 지금 불용액이 넘어온 게 2000년도 쓰고서 남은 불용액이 1,112억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어떻게라도 결산시에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매년 나오는 불용액을 좀 줄여보자, 그래 해 가지고 상당히 공사를 독촉을 많이 했고, 또 잘 아시다시피 7차 교육과정 같은 공사를 대량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많은 공사를 독촉을 하고 해서 불용액을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노력을 해서, 약 한 4백억 가까이는 전년도보다 줄은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시고 이제 그 불용율을 본다면 유치원, 초등학교 쪽 해 갖고서 대개 한자리 숫자입니다. 10% 미만지요. 유치원 같은데는 예산액의 3.2% 불용율이 생기고 그러는데 보면 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육지원기관 여기만 16.6%, 19.4%, 13.7%, 14.8% 이렇게 해서 갖고서 두 자리 숫자

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얼핏보면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라든지 지원기관, 이런 쪽에서 우리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예산을 절감해서 덜 써야 되겠다 하는 긍정적인 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어떻게 또 본다면은 불용적인 면을 본다면 다른 학교의 현장보다도 과다한 예산편성을 해 갖고서 쓰고 남은 액수가 이렇게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어느 쪽이 답변이 맞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응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응균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불용액은 대부분이 예산절감액이 되는 겁니다.

● 이기수 위원

긍정적인 면이란 말씀입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응균

예.

● 이기수 위원

그러면 복지후생비라는 얘기는 대개 교직원들에 대한 복지후생이라든가 이런 측면인데, 이게 16.5% 라고 한다면 이걸 다 써야지 되는 내용 아닙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응균

복지후생비 속에는 연금부담금이니 의료보험부담금, 부담금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금액이 많아지는 겁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여유가 있으시다든지 하면 왜 제가 아직 서면답변서를 못 받았습니까마는, 의료부담금 같은 거 사학에 좀 지원해 갖고서 의료부담금을 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 조금.....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내 사립학교에 대해서 원래 건강보험료 의료보험료입니다. 법인에서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를 부담하는 학교가 저희 전체 중·고등학교 중에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또 서원학원 산하 5개 중·고등학교 같은 데는 하나도 부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칙적으로는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저희가 부담을 안해 주면은 할 수 없이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준 학교운영비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법인에서 부담하지 못하는 의료보험료를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 이기수 위원

그거 해 주셔야 됩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예,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뭐 참 공립학교일 경우는 본인부담하고 국가부담이 있고, 사학에서는 재단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을 못했을 경우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부담한다면 그만큼 학교환경이 열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만은 철저히 해서, 이렇게 많다든지 하면 좀 이거 지원해 갖고서 복지후생에 대한 것이 좀더 잘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예비비가 거의 273억 이게 100% 사실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1년도 말에 보면은 채권액이 304억이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예.

● 이기수 위원

그런데 그럼 우리 저 304억에 대한 이자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채권액 중에 대부분이 공무원자녀한테 대여해 주는 학자금대여금이 대부분입니다. 채권액 중에서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부가 교원단체에 저희가 전세금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아니 왜 전에 명퇴 때문에 우리가.....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채무액요?

● 이기수 위원

네, 채무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했나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채무액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설명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작년도말 현재 805억 남았는데, 금년도에 한 138억을 상환해서 나머지.....

● 이기수 위원

지금 800억이 명퇴 때문에 우리가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명퇴하고 저기 교육여건 개선하는 것 때문에.....

● 이기수 위원

예, 예. 800억이 우리가 채무죠.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예.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반환하고 남은 액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2년도 5월달 현재 665억 400만원이 남은 걸로.....

● 이기수 위원

665억이 남았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665억에 대한 우리가 이자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이자하고 원금하고는 전액 국고에서 나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예.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이윤이 높은 농협 것은 전액 다 상환이 됐고, 지금 남은 것은 재특용자금입니다.

재경부에서 용자받은 재특용자금만 조금 남은 겁니다.

● 이기수 위원

네, 이상 질의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네, 다음은 이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서까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에 몇 가지 궁금한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개요 요내용 가지고서 몇 가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질의해 주셨지만, 해마다 나오는 애기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약 757억 3천, 요게 전년도 대비를 한번 해 봤더니 약 69억 5천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약 10% 정도가 증가된 금액인데,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적정하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4쪽을 한번 봐 주시면 거기 세입면에 국고지원금과 법정전입금 그 두 가지가 예산현액하고 그 수납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 차액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쪽에 국고지원금하고 법정전입금.....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이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국고보조금하고 법정전입금이 실질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입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사업취소나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 교부된 경우가 있고, 또 사업을 종료해 가지고 결산결과 국고금으로 반납한 잔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합치니까 한 2억 4,900정도가

발생이 됐구요.

그 다음에 법정전입금은 2001년도 지방교육세 부과금 중 미징수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 1,2월경에 전부 징수가 되어서, 현재는 지방교부세 중 우리 계에 전입되는 금액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산 당시를 기준을 해서 약 한 4억정도가 미납이 된 상태 였었습니다.

● 이상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5쪽에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764억 중에서 예비비 비율이 약35.7%인 273억 5,500여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비비 불용 비율이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관계법에 의하면, 세출예산의 100분의 1 즉 1% 이상을 계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비비를 거의 1% 이상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그것을 사실상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원인은 저희들이 지금 교육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비 마저 없을 경우에 저희들 세입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학생수업료 수입이 지금 361억입니다. 마는, 또 내년도에 중학교 2학년 시지역 학생들을 무상으로 또 교육을 하다보면 또 납입금이 60억이 줄어들습니다.

그래서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열악한 재정 속에서 있는 돈을 또 다 쓰기도 저희들 예산편성 하는 입장으로는 어려워서,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를 조금 과다 계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 이상일 위원

네, 그 다음에 8쪽에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2001년 2월 중 폭설재해복구비로 1억 6,575만 6,000원이 집행됐는데, 2001년도 도내 초·중학교에서 재해로 인해서 다른 과목에서 예산을 지원한 적은 없습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입니다.

시설말고 피해농가의 자녀들에게는 학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거 외에 다른 항목으로 예비비 외에

다른 항목으로 지원한 거는 없죠, 그럼.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예.

● 이상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개요 2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사고이월 내역 중 8학년 국어과 2학기 지도자료 제작비 54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예산반영 시기가 대개 언제인지, 또 사업은 당해연도에 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편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자료제작을 예산에 편성을 했고, 또 어떤 사유로 이 작은 이런 소규모 사업도 이월을 시켰는지.....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입니다.

8학년 국어과 지도자료는 육천교육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확정이 3회 추경 때 확정이 됐습니다.

● 이상일 위원

3회 추경에.....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예.

● 이상일 위원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2학기분 자료 제작시기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군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네.

● 이상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도 사고이월도 제가 이렇게 쪽 보면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정도는 극복하고 집행해도 될 거 아닌가 하는 이월사유가 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말씀이지만 좀더 아이디어를 짜내서,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어떠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을 해주시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 됩니다마는, 연말에 결산을 해 보면은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차피 국고의존 예산이 많다보니까, 국고가 내려 온 이후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을 뿐더러, 저희들 같은 경우 유난히 2001년도에 교육여건개선 사업자체가 7월 20일 이후에 발표가 되어서 마지막 3회 추경에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사를 상당히 서둘렀습니다마는, 동절기가 닥쳐서 동절기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다소 온도가 좀 내려 갔다하더라도 우리지방보다는 상당히 좀 따뜻한 데이기 때문에 그냥 올해 같은 경우에 공사를 강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중부지방 이후 같은 경우에는, 공사시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공사의 안전성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0도 이하에 내려갔을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다 보니까, 부득이 사고이월액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충분히 사업을 먼저 끝낼 수도 있었는데 완료가 되지 않는 사항들이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염려를 두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판단하시기에는 공이라든지 또는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봐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하겠지만, 제가 언뜻 납득이 안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중평정보고등학교에 난방개선 사업비 3,848만원이 이월이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난방공사 같은 것은 실내에서 하는 거니까 약간 추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가능하면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 큰거 가지고 페이지 없어도 그냥 저기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결산서 51쪽에 보니까 2001년도 정기예금 이자가 76억 2,500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예금 이자가 3천여만원, 그래서 합계 약 76억 5,500, 요건 2000년도 대비 약 7억 7,300여만원이 증액한 액수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이렇게 많은 예금이자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신 걸 고맙게 생각하고, 다음에도 운영을 좀더 해서 예금자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인건비 과다 계상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요거를 조금 전용해서라도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부분에 좀 투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교원 자격 및 일반연수 기타연수 여비는 현행 학교직원운영경비의 총액으로 교부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선학교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데 교원연수 계획은 도교육청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연수계획은 교육청에서 수립하고, 여비는 학교에서 지급하기도 때문에,

학교에서 연수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예산편성이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확한 인원을 모르니까, 그래서 연수여비는 공통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편성했으면 어떠냐 하는 일부 학교의 의견이 있어서 저는 어떻게 좋은건지 잘 모릅니다마는, 한번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는지, 연수계획은 도에서 세우고 예산은 학교에 보내는데 그게 잘 안맞는다고 그래요.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우선 학교회계 제도가 생기면서, 총액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산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 이미 교육계획이 서고, 예산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별로 학교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단가며 인원이며 이런 걸 내줍니다. 어려움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우선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일 위원

하여튼 일선 학교에서 그게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좋은 방법인지 한번 의견수렴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네, 이충원 위원님 이어서 하시죠.

우리 집행청 관계관계서 사실은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이 앞으로 예정되는 시간이 그리 오래지 않을 거라고 미루어 보고, 조금 참아주신다면은 또 저희들이 그냥 회의를 속개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해주시죠.

그러면 이충원 위원님.....

● 간사 이충원

이충원 위원입니다.

거의 마지막에 여쭙보는 거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저는 끝날 겁니다.

중복되는 것을,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을 거의 다 질의했습니다. 집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조금씩 할테니 간단히 대답만 해 주세요.

인건비 문제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셨는데, 요거 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그렇습니다.

● 간사 이충원

국고는 경직성이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인건비는 경직성입니다.

그 인건비는 타과목으로 남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쓰고.....

● 간사 이충원

전용이 불가능하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는가 하면은요, 국고가 아니고 지방부담으로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지, 프로테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행정요원들이 현장에 가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족합니다. 잡무가 많다고 그러는데 가능하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남길 바에는 국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방재정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연도별로 계약제로라도 사무보조원 같은 것을 쓸 수 있는 건지 임시직으로라도, 학교에 가 보면 난리거든요.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저도 모르니까, 저 국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방재정으로 편성된 예산이 몇 %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남는지 지금 3.4% 남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능한 건지 저도 모르니까, 그때 그때 1년만끔 계약을 해서 학교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가능합니까? 안가능합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그거는 자체적으로 교육감이 결정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인원이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어서 사용되느냐의 재원의 염출문제지, 인원을 임시직으로 쓰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고, 다만 이제 정규직으로 하는 거는 총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 **간사 이충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은요,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마지막 회기인데, 4년내내 보면 인건비는 상당액이 남거든요, 지금도 3.4% 남았는데 그래서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쭙보는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덧붙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래 우리가 관계법령에 의하면은 교원의 인건비는 국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도가 국가에서 주는 정원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감께서 어떻게 인원을 채용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재정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습니다마는, 정원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이 수령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장에서는 상당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큰 400여명을 채우

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이 재정을 담당하는 제 입장으로 볼 때에는 사실상 여유재원이 되는 거고, 국가에서 볼 때에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그만큼 정원을 줬으니깐 교원을 채용해서 교원인건비로 쓰라는 것이 사실 국가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인건비가 남는다고 해가지고 연초부터 그것을 딱 인건비로 편성하지 않고 두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나, 2학기 때도 얼마를 편성해서 다시 또 채용해서 쓸는지 모르는 입장이고, 또 교원들이 본래 인원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정원보다는 조금 프로테지를 줄여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저희들이 교원인건비로 나온 걸 가지고 다른 인건비, 즉 일반직들한테 더 일반직을 더 쓴다든가, 뭐 축구코치를 더 쓴다든가, 뭐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충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교육현장에서는 교원들 업무경감이든가 또 업무폭주를 경감해 주기 위해서는 많은 보조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를 해 주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교원업무 경감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넣어줄 수 있

는가 해서, 일정한 학교에까지는 저희들이 좀 넣어 주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도 조금 확대하고 37학급 이상 되는데는 본교 자체 예산가지고 하다보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 **간사 이충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조금 도와줬으면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소요판단을 정확히 해서 가능하면 코치 얘기 나왔는데, 어떤 지역에는 코치를 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이 개인 돈으로 지금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각 보조요원이라든지 저는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급한 것이 학교의 교무보조나 서무보조를 조금 연도별로 채용을 했으면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비비 역시 똑같은데요 생각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과다액에 대한 건데, 지금 270억 정도거든요 그렇죠. 남은 게 엄청난 겁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그래요 보니까, 언젠가는 20 몇% 까지 예비비가 있었는데, 이것도 몇 년을 우리가 추경해보고 경험해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게 판단이 설텐데, 누가 보든지 이렇게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놓으면 재정을 아는 사람은 좀 탄대 의문을 자꾸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거 저 탄대 쓸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런 오해는 받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역시 얘기인데요 지방채 상황인데, 얼마나 지금 지방채가 지금 저희가 남아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665억입니다.

● **간사 이충원**

665억, 그러니까 순수입 지방채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 **간사 이충원**

연간 예산 지출되는 게 대개 얼마였죠? 저도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이자상환이, 아니 대충.....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보통 지금 저희들이 지금 농협금융체는 다 얻었습니다.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게 약 5.78% 정도 되는 재특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재특을 저희들이 예산이 예비비가 같은게 있어서 값는다 하더라도, 그건 조금 어려움이 재정경제부로부터 그것이 여유자금을 그분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쓴다고 하면은 낸다고

그러는데서 내서 또 판데 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일시에 예산이 있다고 해서 갚을 수가 없고, 또 두 번째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또 많은 액수를 사실은 갚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인 것은 작년까지만해도 국고가 원금이자를 다 대주겠느냐라고 그래서 많은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셨는데, 2001년도, 2002년도 현재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100% 다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이 높고 낮은 것보다는 상환 재원이 과연 국고에서 오느냐 저희들 자체 부담으로 줄 거냐 그런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국고가 줄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안심입니다.

● **간사 이충원**

네, 알겠습니다.

제 예상보다 한 30억을 그냥 또 이월했기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역시 똑같은 생각인데, 요거 한번 좀 제가의문이 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몇 군데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당초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하지 않습니까? 입찰이든지 수의계약이든

지 상관없이, 발주당시에 예산액보다 다음에 추가로 그 계획되거나 실행되는 소위 건축비라든지 경비가 더 많은 경우가 작년엔 어느 정도나 있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짓는 대단위 공사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거의 플러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고에서 주는 낙찰차액 가지고 부대경비까지 거의 쓰다시피 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쓰는 거 중에서 일부 부득이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입장으로는 거의 낙찰차액 범위 내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2002년도에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다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 단순한 특별교부금만 가지고 짓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학교, 요런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를 조금 틀어준다든가, 축대를 다시 쌓아준다든가, 아니면 국고를 조금 돌려준다든가, 요런 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을 좀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양은 아닙니다.

● **간사 이충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추가로 발주해야 할 뭘니까?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래 처음에 계약한 수의계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보다도 추가로 오히려 건축해야 할 부분 많은 학교가 몇 학교가 있느냐 이걸 제가 여쭙 보고자 합니다.

왜 그런고 하나면은요, 저는 내용은 이 분야는 잘 모릅니다마는, 같은 공사현장은 대개 수의계약 주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 간사 이충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처음에 3억에 입찰봐서 하다가 보니까 추가로 작년도에 그런게 있거든요. 제천도 그렇고, 예성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액수가 그거보다 커서 본 예산이 그거보다 커 가지고서 혹시 수의계약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충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당초 예산보다 추가로 수의계약 할 예산이 더 많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천고등학교라든가 제천여고라든가 예성여고 같은 경우는, 아예 발주할 때부터 조금 사업이 늦더라도 수의계약 쪽으로 가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부득이 해서 이빨 빠진

교실이 나중에 추가로 특별교부금이 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부득이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 경우가 한 두 학교정도 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엔 올같은 경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제가 좀.....

● 이충원 위원

네,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됐는데 나중에 그보다도 본낙찰된 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추가, 됩니까? 공사가 공사의 요인이 생겼을 때에, 그때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시 수의계약한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거는 없습니다.

● 간사 이충원

없어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이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의 계약금액보다 추후에 수의계약한 금액이 더 컸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 간사 이충원

맞습니다.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그래서 저희 방향을 수의계약을 최대한 지양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가 완료가 덜했을 경우

에는, 사실상 좀 공사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완료가 된 이후에 공개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오창고등학교하고,

● **간사 이충원**

아니, 글썽 같은 현장이라도?

●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응균**

예, 안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안했습니다.

다만, 오창고등학교하고 진천고등학교하고 충주여고는 수의계약을 안하면 안 될 사정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공사가 마무리 단계가 아니고 초기단계에서 다음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 학교는 다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 **간사 이충원**

다행이네요,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쭙본 게 바로 그런 의미인데, 공기를 연장하든지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해서 수의계약을 시도하는 경우가 혹시 없었나, 그래서 여쭙보는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당초에 사업이 조금 늦더라도 같이 종합해서 발주한 경우가 제천여고 같은 경우 제천고등학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운영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긴급성으로 인해서 사업을 아예 예산은 두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본예산에 들어 있고 추경에 들어 있고 이런 경우에, 부득이 해서 사업을 발주를 빨리 해야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예산 사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시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게 진천고등학교 같은 경우, 음성고등학교 이런데가 있습니다.

● **간사 이충원**

네, 이상으로..... 어디가 수의입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아, 죄송합니다. 진천은 아니고 제가 발언한 것 중에서 음성고등학교가 그런 내용입니다.

● **간사 이충원**

음성이죠, 음성.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개를 다시 한데가.....

● **간사 이충원**

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좀 시간을 줄여서 말씀을 올

려야 될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결산서를 그간에 제가 한 것을 쪽 봤어요. 봤더니 제 나름대로 생각에 매년 거의 지적된 것이 지적된 게 많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 위원장 조일환

그렇다면 결산감사 무슨 의미가 있겠나 무슨 의미가, 저는 이게 어떤 제도보다도 우리 집행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것을 시행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문제다 이거예요, 의지가. 이 예산의 성격으로 봐서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될 거냐 추경에 들어갈 것이냐를 이거를 구분을 안해 주시고 해서, 예비비나 사고이월비나 뭐 이런 것이 발생했다면은 주는 돈도 못쓰는 거다, 주는 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예비비에 대해서 다 위원님들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교육청은 저희 교육정보다 특별히 여건이 낫습니까? 그런 교육청도 1% 미만의 예비비로 충분히 교육청 예산을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저는 농협 직원한테 우리 예산의 평잔액이 얼마나 되느냐, 처음에 2대째 왔을 때 600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1,000억이 넘죠, 1,000억이. 그래 어느 개인업자라면 은행에 이자를 불러줄라고 심하게

말하면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솔직히.

어째서 그럴까 어째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도 참 청빈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공지로 압니까?

지금 제가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소방파출소나 파출소에 가서 아유 수고하신다고 정말 봉투를 내면 안받습니다. 아유 지금 그럴 정도도 공무원들 의식이 바뀌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뭐그런 일 있습니까? 전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어진 예산을 정말로 적기에 쓸 수 있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느냐 안하느냐 저는 그 의지가 문제지, 여기에 심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매년 똑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참 이런 기회도 없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하려고 조금 질의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는 기획예산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예산요구라고 하는 것은 기획에서 먼저 합니까? 우리 지원과에서 먼저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1조 몇 천억이

든 예산을 세울 때에 기획과 운영지원 이
양쪽에서 협의를 하겠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 위원장 조일환

그렇죠.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충청
북도의 2003년도의 사업 또는 예산이 이
런 정도 필요하다 하고, 기획에서는 인건
비나 이런 거는 안하고 일반 사업만 요청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짤 때에 어떻게
의견조절하고 어디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가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예산편성지침
에 의해서 하는데, 경직성 경비라든가 법
정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당국에서 직
접 예산계에서 하고 기획관리과장님이 하
고, 그 나머지 사업성에서는 사업 해당
과에서 일년동안 아니면 수년동안 해 오
던 여러 가지 관례의 장단점을 고쳐 가면
서 개선할거는 개선하고 해서 방침을 정
해 가지고, 해당 과에서 방침이 결정되면
은 기획예산과장한테 요구가 되고 거기서
수합이 되가지고 간부들이 조금 더 손질
을 하지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해 달라고 넘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저는 위원 3대 때를 맞으면서 가장 썼
을 수 없는 우리 위원들의 모욕이요 저는
수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이초등학교
사건입니다.

얼마나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이론적으
로 맞게 고생하시면서 의결했느냐 이거예
요. 그런데 그 예산을 보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과에서 적정하게
한 것이냐, 이거 뭐 속기록에 있습니다마
는 똑같은 6학급에 어디는 20 몇 학급이
요, 어디는 15학급이요, 어디는 20 몇억
이요, 어디는 10 몇억,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그럼 이러한 예산편성이 기획에서 나왔
느냐 지원과에서 나왔느냐 이거죠. 어디
에서 나왔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김진성입니다.

예산편성 작업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겪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설업무는 시설계가 따로 있
습니다. 그래서 시설카드에 의해서 각 건
물의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과 저희들
기획관리과에서 나오는 수용계획 이런 것
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거기에 국고라든
지 지방비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 아
까 여러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아주 실
사제에 의해서 각 선생님들 호봉을 전부
조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편성하게
되고, 일반사업 관계는 각과에서 아까 국
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비전 21 이
라는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
는 사업, 또 연간 계속되는 사업들이 매
년 계속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총액 예산 범위 내에
서 실무자로부터 교육감님까지 사정과정
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대충에 이루어지는 경우고, 아
까 말씀하신 그런 시설사업 어떤 소이초
와 보은에 어떤 초등학교의 같은 규모의
예산차이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시설을 더 넣느냐 덜 넣느냐 하는 부분,
또 기존 학교에서 아주 전혀 다 개축를
해 주는 부분과 일부분만 개축해 주는 경
우, 이런 경우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시설사업은 케이스 바이 케
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계를 여러번 말씀하시
는데 제가 이걸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비비가 사실 저희 도 같은 경
우 예산을 알뜰히 쓰기 때문에 사실 타도
에 비해서 좀 있습니다. 있으나, 200억이
라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2천명 가까

운 일용잡급을 쓰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월급 몇 *만 올려줘도 100억씩은 금방 나
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숙원 사업을 한
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할 때는, 투
자 할 수 있는 이런 자원 비축적인 그런
일면이 밑에 깔려 있다 이런 쪽으로 말씀
드리면서, 아마 향후로는 이런 걱정을 안
끼칠 정도로 균형예산이 편성될 걸로 보
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은 흔히들 남들이 보실
때는 그냥 단순히 앉아서 아니다 깎는 어
떤 작업과정으로 보시는데, 굉장히 복잡
하고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심사숙고
해서 일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위원장 조일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21세기 비전이 잘못 됐다면 수정
을 하세요.

그래 여고에 신축 건물을 하는데 12월
달에 추경에다 올리면 그건 뻔히 사고이
월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런 아주 기본
적인 말이에요. 기본적인 사업이 그래 추
경으로 된다는 거는 저는 이해를 못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해.

그리고 뭐 촉구지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선에 가면요 자율적인 학부모들이 출연하는 경제적인 이런 건 받아도 좋다. 지금 행정부의 어느 기관에서 그걸 합니까? 난 이거 이해 못합니다.

경찰간부에서 자 우리 자율방범이라든지 우리 경찰업무에 필요해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주는 예산을 받아서 쓰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솔직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위원회 회장이 되면 학교에 뭘 내놓을 거냐 이게 공식화 되어 있어요, 공식화.

그것 때문에 안하는, 사양하는, 적격자인데도 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같이 걱정하셔야 될 일인데, 우리 교육예산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고 예비비가 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남기는데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의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불요불급, 아주 긴급한 거는 국가예산에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게 결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아까 학생이 영구불구자가 됐어요, 영구불구자가. 돈으로 계산이 안되죠.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그걸 왜 여기서 하느냐 이 사고도 왜 났느냐 예산만 따질 일이 아니에요, 교실의 창이 구조가 잘못됐으면 우리가 21세기 비전 바뀌서 학교시설에 모델을 바꿔야 되겠죠.

얼마나 누구의 잘 잘못 구상권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나 저희들이 불행한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예산을 제가 다뤄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시작서부터 그 다음에 집행하고 결산할 때까지, 정말로 내가 우리충북 교육예산을 어느 시·도 못지 않게, 정말로 교육적으로, 정말 양심적으로, 정말로 공평하게 지금 충북교육의 문제가 되는게 뭐예요 인사하고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번에 제가 행정질의때 꼭 부탁 말씀드린 것을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우리 충북교육에 대한 기업진단을 하자 이겁니다. 저는 하자 이겁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이런 형식적인 감사에 머물지 말고, 수천원 억대를 들이더라도 우리가 정말 교육을 위해서 제대로 우리 교육청의 예산, 인사, 무슨 교수저 같으면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래서 그런데서 좀더 전문가가 좀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 제가 결산감사위원회에 대해서 들어오면서 2대 때 들어오면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 올리는 겁니다.

결산감사에 제가 일일이 어느 분이 뭐 하셨는지 안 여쭙 보겠는데, 대개 고정으로 단골 손님 많고요, 솔직히.

또 이 결산감사위원을 도의회에서 구성을 합니까? 국장님, 여기서 추천을 하나도 안합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아닙니다. 도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 위원장 조일환

의회에서.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 위원장 조일환

그러면 제가 2대 때도 말씀을 올렸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도의회에 우리가 심의한 것을 다시 거기서 심의하는데, 도의회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심의한다면 이건 뭐 이중 심의 중에서도 우스운 모양이네요.'

1대 때는 위원님들이 한 두 분이 결산감사에 참여를 시켰다는데, 그런 것쯤 그래야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말 우리예산을 결산을 확실히 교육적으로 물론 그분들도 전문가라 잘 알겠습니까마는, 교육위원이 1년간, 2년간 우리 교육을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요청을 공문서를

보내느냐 모르겠습니까마는, 그거 안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째서 여기에서 그런 명단을 드리는지 자료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까마는, 저는 결산서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에 정말로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입지도 있는 거고, 또 그 동안에 아시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그러면 이런 심의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감사에 대한 수감자의 입장에서 누구를 또 이렇게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서 문서화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이 의사를 통해서 한번 그 절충을 구두로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국장님 말이에요.

내가 솔직한 얘기로 나도 이거 어디서 했는지 한번 알아 봤어요. 교육청에서 뭐 추천을 하신다며.

모르겠어요. 나는 그 분이 근거가 있는지 몰라도 대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신다면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적이든 공적이든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광수 위원

저기 위원장님, 그것은 집행청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도의회에서 결산감사위원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1대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은 도의회한테 절충을 하고 이렇게 할 사정입니다. 집행청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 위원장 조일환

예,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럼 우리 교육위원회 제가 모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어튼 집행청에서도 제가 듣기에는 여기 어느 어느 사람이 무슨 잘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걱정한 감사로서 추천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들한테 전입되는 전입금은 어떻게 전부다 우리가 수입이 됐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지금 전액 다 왔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타시·도에 비하면 상당히 좋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재산의 운영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그 창고나 이런데 보면은 더러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연도가 안 돼서 이걸 폐기를 못한다 여

러가지 그런게 있는데, 정말 학교장 중심으로 한다면 예를 들면 특히 컴퓨터 같은게 그런게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내버리지도 못하고 이걸 감사 때문에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실용예산, 실용재산 관리 하자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5년 되야 꼭 바뀌야 되고 6년 되야 뭐 그런 제한 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런 쪽으로 해서 학교의 재산이 효율적으로 이것이 관리되어서 불필요한 이런데 저거를 쓰지 않도록.....

이제 아까 인건비 얘기 나왔는데 제가 뭘니까? 충주에 강천초등학교 가니까 행정사무보조는 없데요, 누가 예산을 다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조무원이 이래하고 교감이 이래 합니다.

가뜩이나 아까 인건비 남아도는데, 그런데 임시직나 행정보조원을 우리가 채용해서 일례입니다마는 보낼 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규정이.

그러나 인건비를 이월까지 해 가면서, 정말 학교에 특히 이런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직에 좀 신경을 쓰시면은, 그렇지 않으면 참 교감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제가 책

임자입니다. 지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앞으로 좀 될까요?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반 행정직들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회계를 집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다음번 인사 때에는 소규모 학교에도 일반 행정직을 100%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일환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사무원은 교육감의 정책에 의해서 채용할 수 있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정원제에 제안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쓰는 순수한 정규직을 뺀 인원이 약 급식이니 여러 가지 분야를 합쳐가지고 한 2천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람을 한번 쓰면은 참 계약을 다시 안 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따르는 의료보험이니 뭐 여

러 가지 또 부수적인 것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을 늘리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경감 차원에서 한 학교에 1명씩 교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넣고, 그 뒤에 부족되는 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네, 제가 질의를 마치고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무리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주셔도, 실제 집행하시는 우리 집행청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정말 사적인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효율예산을 써 보겠다는 저는 그런 것만 가지고 계시고 실천하신다면, 우리 교육의 예산의 큰 문제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열심히 충실한 질의를 해 주셨고, 집행청 간부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가 우리 충북교육의 주춧돌이 되도록 제가 부탁을 올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저의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결산에 대해서 의결을 하

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수정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교육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의 응답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질의 저거는 안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시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도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그리고 심도있게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 40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고생을 시켜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진행을 제가 미숙하게 한 점 이해해 주시고, 집행청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우리가 논의 드리고 부탁 말씀 드린 사항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충북교육 예산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침과 아울러서 제2차 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조일환, 간사 이충원,
위원 김광수, 송진하, 이기수,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백남권,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오형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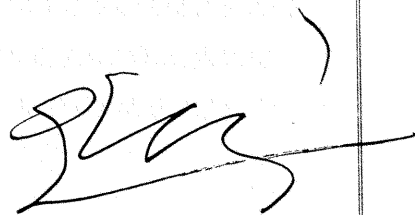
※ 별 책 부 록

- ▶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본회의(별책 1)
- ▶ 2001회계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본회의(별책 2)
- ▶ 2001회계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본회의(별책 3)

제14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2. 6. .

위원장 조 일 환



(별첨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 14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 건	비 고
'02. 6. 4. (화) 본회의 종료후~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2. 6. 5. (수) 11:00~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의결) 2.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의결)	

